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행정협의회의 규약중 명칭변경과 자치단체구성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및 합리적으로 정비함은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간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로써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연간 몇회정도 개최되는지
- 답 : 1년에 1~2회정도 개최됩니다만 회의운영이 아직 미숙한 실정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9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